

개정판 『교리와 장정(2019년)』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정판 교재가 나오기까지 참고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 개정판, 2019년 1월 15일(1판 5쇄)

< p. 6 >

제3장(장로과정) ④ 연수과정

2. 제2과정: 교회성숙을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사회복지,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에 관련하여 교육한다.(개정)

< p. 61 >

제9조 → 제10조

제10조 → 제11조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 감리회의 교인은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제11조 → 제13조

제12조 → 제15조

제13조 → 제17조

< p. 62 >

제2절 제6조 → 제2절 제11조

(추가) → ⑩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제8조 → 제13조

제9조 → 제14조

제8조 → 제13조

제10조 → 제15조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해야 한다. →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해야 한다.

제11조 → 제17조

제11조 → 제17조

제12조 → 제18조

< p. 63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 있으며(본래 권사라는 말이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여야 한다.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 있으며(본래 권사라는 말이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여야 한다.

제13조 → 제19조

제12조 → 제18조

제14조 → 제20조

제15조 → 제21조

제15조 → 제21조

제16조 → 제22조

제16조 장로의 자격은, ①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이 있으며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한 이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이 된 사람이고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오는 이여야 하며, → 제22조 장로의 자격은, ①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이 있으며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한 이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이 된 사람이고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오는 이여야 하며,

제17조 → 제23조

제19조 → 제25조

⑤ 담임자 부재시나 유고시에는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p. 64 >

제20조 → 제26조

장로는 지방회에서 다음과 같이 인사관리를 받는다. 제21조에 보면,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 장로는 지방회에서 다음과 같이 인사관리를 받는다. 제21조에 보면,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다만,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이명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로가 다른 지방의 교회로 이명 하려고 할 때에는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지방 감리사가 이명 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지방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장로가 다른 지방의 교회로 이명 하려고 할 때에는 담임자 및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방 감리사가 이명 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지방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만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명증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 제33조

< p. 65 >

제38조 담임자의 직무를 보면, → 제46조 담임자의 직무를 보면,

⑤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의 발굴과 지도 육성 등이 담임자의 직무로 되어 있다. → ⑤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의 발굴과 지도 육성 ⑥ 감리회 신앙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감리회 교재 사용을 권장 ⑦ 감리회의 소식을 나누기 위하여 「기독교타임즈」 구독을 권장 등이 담임자의 직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담임자는 행정 책임자로서

② 법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며, → ②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하며,

⑧ 이웃 교회들과 친선을 도모하고 연합 사업에 협력하는 일, → ⑧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지방, 연회, 전국 감리회 평신도 단체 연합회와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적극 협력하는 일,

⑨ 총회, 연회, 지방회 부담금을 기일 안에 납부하는 일 등이 그 직무로 되어 있다. → ⑨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는 일(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각 의회의 장이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며,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추가) ⑩ 담임자 이임 시 개체교회의 사무와 행정 재정 등 교회 현황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⑪ 교회 재산 변동사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일 등이 그 직무로 되어 있다.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로서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로서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하게 되어 있다.

< p. 66 >

개체교회의 부서는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봉사부, ④ 문화부, ⑤ 재무부, ⑥ 관리부로 구성된다.
→ 개체교회의 부서는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봉사부, ④ 예배부, ⑤ 문화부, ⑥ 재무부, ⑦ 관리부로 구성된다.

(제44조~제46조) → (제52조~제53조)

속장의 직무(제49조) → 속장의 직무(제57조)

선교부의 직무(제45조)는 → 선교부의 직무(제53조)는

교육부의 직무(제52조)는 → 교육부의 직무(제60조)는

사회봉사부의 직무(제54조)는 → 사회봉사부의 직무(제62조)는

(추가) 예배부의 직무(제64조)는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 ②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 ③ 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

문화부의 직무(제56조)는 → 문화부의 직무(제65조)는

재무부의 직무(제58조)는 → 재무부의 직무(제68조)는

< p. 67 >

관리부의 직무(제60조)는 → 관리부의 직무(제70조)는

< p. 68 >

단, 감사는 평신도 임원 중에서 재무부 부원이 아닌 사람을 택하여야 한다.

→ 단, 감사는 교회 평신도 임원중에서 피감 대상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연회 준회원의 자격은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나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M.Div. 또는 Th.M.)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4호를 제외한 해당하는 자는 1년간 서리로 사역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업된다. 1.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 수련목회자와 학원수련선교사 3. 수련선교사(선교국 선교사 인준자) 4. 군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 합격자) ⑨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감리회의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신학석사학위 과정 모든 학기에 감리회 목회실습을 받고 담임목사의 평가를 받아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는 학기말 평가 후 감리회본부(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감독의 파송을 받아 과정법에 따라 2년간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⑫ 수련목회자 혹은 기관파송 전도사로 연회 준회원 과정을 마쳤으나 연회 전까지 파송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이는 자격을 준필로 하되 파송지가 결정된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 p. 69 >

제4장은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에 관한 규칙이다. 감리사는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0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여야 한다. → 감리사는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2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여야 한다.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연회 감독의 파송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4년 이상 시무한 이여야 한다.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 연회 전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감리사의 임기(제85조)는 2년으로 한다. → 감리사의 임기(제96조)는 2년으로 한다.

감리사의 선출은 제84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감리사의 선출은 제95조(감리사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시 해당자가 없으면 2차 투표 시 다수 득표자로 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연급,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 p. 69 >

제5장은 감독과 연회 본부에 대한 규칙이다. 감독의 자격은 ②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 감독의 자격은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 p. 70 >

감독은 연회에서 목사안수례를 집례하고, 감리사를 임면하며, 필요시에는 지방회를 분할한다. → 감독은 연회에서 목사안수례를 집례하고, 감리사를 임면한다.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본부의 조직은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출판국 ⑥ 연수원 ⑦ 행정기획실로 되어 있다. → 본부의 조직은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행정기획실 ⑥ 연수원으로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모든 의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교역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여성 대표가 평신도 대표의 30%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 모든 의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교역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 입법의회는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p. 71 >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회원의 수로 한다. →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회원의 수로 한다. 다만, 교회 분립과 통합을 위한 당회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한다.

당회의 직무는

⑦ 장로 후보에 투표하여 2/3이상의 가표로 장로 선출, → ⑦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

로 선출하되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

⑧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에 대한 제명 의결, 단 장로의 경우는 지방회의 절차를 밟는다. → ⑧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명 의결, 다만 장로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의 절차를 밟는다.

< p. 72 >

구성원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등이다. → 구성원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등이다.

(삭제) 구역회는 재적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구역회의 직무는

(추가) ⑨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하는 일 등이다.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구역 인사위원회는

소집 통보는 소집 일시와 장소가 기재된 소집 통보서가 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 소집 통보는 소집 일시와 장소가 기재된 소집 통보서가 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 p. 73 >

지방회는

그 구성은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인 교역자, 장로, 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과 선교사 후보), ... → 그 구성은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인 교역자, 장로, 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 후보, 기관목회자)**, ...

지방회의 중요한 직무는

연회 준회원이나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이에 대한 연회 천거, →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이에 대한 연회 천거,

연회 평신도 대표는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권사를 연급 순으로 선출하되, 가급적 여성이 3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회 평신도 대표는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권사를 연급 순으로 선출하되,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 p. 74 >

이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감리사, 서기 및 회계, 각 부(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 총무, 교역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으로 조직된다. 감사와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은 직권상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 이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감리사, 서기 및 회계, 각 부(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 총무,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된다.** 감사는 직권상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제4편 제8장 제113조, 총회의 구성) → (제4편 제9장 제123조, 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 p. 75 >

입법의회는

헌법개정,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감리

회 태화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의 제정 및 개정,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과정의 제정과 개정,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 등의 직무가 있다.

→ 입법의회는 헌법개정,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제정 및 개정,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과정의 제정과 개정,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 등의 직무가 있다.

< p. 91 >

감리교회의 임원 조직은 장정에 의하면

또한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와 그 교회에 있는 연회 회원, 곧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들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임원회는 대부분 교회마다 1개월에 한 번씩 모여 교회 안 모든 기관의 사업을 보고받고, 시행 계획을 연구·검토하여 시행케 한다. → 임원회는 교회 안 모든 기관의 사업을 보고받고, 시행 계획을 연구·검토하여 시행케 한다.

< p. 93 >

당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되 필요에 따라 임시 당회로 모이며, 임원회는 매달 한 번씩 모인다. 당회는 그 교회의 일 년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연구·의논하고 결의하여 실행하는 기관이다. → 당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되 필요에 따라 임시 당회로 모이며, 그 교회의 일 년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연구·의논하고 결의하여 실행하는 기관이다.

임원회는 회장이 되는 담임자가 매달 한 번씩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때로는 기획위원회와 협의한다.) → 임원회는 회장이 되는 담임자가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때로는 기획위원회와 협의한다.)

< p. 95 >

당회에서 조직된 선교부, 교육부, 문화부, 사회봉사부, 재무부, 관리부, 이 여섯 가지 부서가 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당회에서 조직된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이 일곱 가지 부서가 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 선교부 (1) 조직

(삭제) ③ 선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위원회가 필요하다. ㉠~㉣

(추가)

③ 속회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한다.

④ 교회의 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장을 둘 수 있다.

< p. 97 >

(추가)

4) 예배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자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예배부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헌신하여야 한다.

(1) 조직

- ①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예배부를 조직한다.
- ② 예배부는 부장 1명과 총무 또는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 직무

-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
- ②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
- ③ 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

5) 관리부 6) 재무부 → 5) 문화부 6) 관리부 7) 재무부

< p. 99 >

3. 임원의 임무 1) 집사 (1) 집사의 자격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로, 당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로, 당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

< p. 101 >

(3) 집사의 직무와 사명

- ① 기능에 따라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의 임무를 분담한다. →
- ① 기능에 따라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의 임무를 분담한다.

< p. 103 >

3. 임원의 임무 3) 권사 (1) 권사의 자격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 ⑤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옮겨 갈 때에 담임자의 이명증서가 없으면 권사로 인정할 수 없다. → ⑤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자가 교부한 이명증서가 이명해 가는 담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 p. 104 >

(3) 권사의 직무와 사명

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직무

- ㉠ 담임자의 지도 아래 기도회를 인도한다.
- ㉡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 ㉢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 ㉣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 p. 105 >

4) 장로 (2) 장로의 자격

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장로의 자격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 p. 106 >

다. 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4년 이내에 수료한 이 →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5년 이내에 수료한 이

(3) 장로의 직무 처리

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삭제) ⑧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수정) (4) 장로의 파송과 관리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수정) (5) 장로의 인사관리

①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다만,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이명 할 수 없다.

② 담임자가 정기당회를 거쳐 서면으로 장로의 파송 유보를 요청한 경우 지방회 개회시에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며, 지방회가 닫힌 후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장로의 교회 파송 여부를 심사하여 감리사가 파송 또는 유보 할 수 있다.

③ 장로가 다른 지방회의 교회로 이명하려면 담임자 및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방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 지방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만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명증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일 지방회 내에서의 이명은 소속교회 담임자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 담임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에게 파송을 요청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p. 108 >

4. 교회 안의 여러 기관 1) 교회학교

교회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부서가 있다.

(수정)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 p. 109 >

2) 남선교회

남선교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로 한다. 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 남선교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 p. 207 >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제2편 제2장 제11조의 규정과 같이 →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제2편 제2장 제13조의 규정과 같이

‘교리와 장정’에서 규정한 장로의 자격(제3편 제2장 제5절 제16조)은 → ‘교리와 장정’에서 규정한 장로의 자격(제3편 제2장 제5절 제22조)은

< p. 208 >

3. 장로의 자격 1) 감리교회의 장로 자격

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 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 p. 213 >

4. 장로의 직무

그렇다면 장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장로의 직무(제3편 제2장 제5절 제19조)를 살펴보자. → 그렇다면 장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장로의 직무(제3편 제2장 제5절 제25조)를 살펴보자.

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